



제18342호 2014. 9. 4.(목)

【총 리 령】

○총리령제1094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부 령】

○법무부령제82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6

○농림축산식품부령제102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8

○해양수산부령제92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8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4-437호(귀화허가) 24

○법무부고시제2014-438호(귀화허가) 28

○법무부고시제2014-439호(귀화허가) 32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42호(2015년 최저생계비) 34

○환경부고시제2014-151호(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 34

○환경부고시제2014-152호(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42

○환경부고시제2014-153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57

○환경부고시제2014-154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69

○환경부고시제2014-155호(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75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6호(과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발기간 변경)..... 7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9호(국토교통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변경) 80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24호(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취소) 82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4-15호(방송통신표준 제정 및 폐지) 83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9호(국적취득)..... 8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21호(국적상실)..... 85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246호(도로구역 결정<변경>) 85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7호(도로구역 결정<변경>) 86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428호(접도구역 지정<해제>) 87

(이면 계속)

●보건복지부고시제2014-142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5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2015년 최저생계비

□ 2015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가구: 2,902,892원)

□ 2015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2,098,361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49,645원 증가 (8인가구: 2,348,006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14-151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1조·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2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및 거래소 감독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배출권의 거래,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또는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또는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제 2 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운영

제 1 절 배출권 거래 계정의 종류

제3조(계정 구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배출권 거래 계정은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자 계정) 제3조에 따른 관리자 계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영 제24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배출권 거래 계정을 말한다.

1. 총량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국가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총수량을 생성하고 다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2. 무상할당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3. 유상할당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4. 예비분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보유하기 위한 계정
5. 제출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배출권을 폐기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6. 폐기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배출권의 영구 폐기를 위한 계정
7. 거래소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장내거래의 청산·결제를 목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계정
8. 기타 계정: 영 제24조제5항제4호에 근거하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내규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정한 계정

제5조(사용자 계정) ① 사용자 계정은 할당대상업체 및 거래 참여자의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정으로 개인 계정과 법인 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계정에는 해당 계정의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하는 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등록한다.

제 2 절 계정의 등록

제6조(관리자 계정의 등록)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관리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제7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제8조(사용자 계정의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가 제출한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사용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사용자 계정은 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 ①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18세 이상의 자

2.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10조(등록신청의 반려)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①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

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②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 계정에서의 배출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제12조(계정등록 수수료)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및 등록유지, 계정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변경,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관련 증명서 발급 시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접수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 3 절 계정 정지 및 폐쇄

제13조(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 업체의 사용자 계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일시사용중지 신청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에서 배출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자 계정을 유지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한 신청인이 계정의 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그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계정 정지)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배출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
3. 잔고 배출권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4. 계정대표자가 궤위된 경우
5. 부과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6.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
7.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
8. 배출권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 폐쇄) ① 환경부장관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쇄의 신청이 계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의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을 예비

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 4 절 계정 정보의 변경

제16조(계정 정보의 갱신)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17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①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 5 절 배출권의 생성 및 할당 배출권의 이전

제18조(배출권의 생성)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의 배출권 총 수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 생성한다.

제19조(할당 배출권의 이전) ① 환경부장관은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법과 영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무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무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영 제16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유상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 6 절 배출권의 제출

제20조(배출권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월 및 차입) ①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제출한다.

② 차입한 배출권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배출권의 폐기) 환경부장관은 폐기 계정으로 이전된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

제 7 절 시스템 간 연계

제23조(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4조(거래소 시스템과의 연계)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배출권 거래소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 8 절 정보관리 및 보호 등

제25조(정보누설 금지) 이 법과 영에 따른 배출권 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각각의 계정 및 거래 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제26조(배출권 장외거래의 방법) 배출권 장외거래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배출권 장외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 종류, 수량, 거래일시, 가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1항제2호의 합의 공증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점은 제1항 각호의 서류가 모두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본다.

제28조(배출권 장내거래의 신고)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결제를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결제할 배출권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영 제27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 4 장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제29조(지정요건의 유지)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기술·시설·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매매체결 대상상품)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2. 상쇄배출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제32조(시세의 공표) 배출권 거래소는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권 상품의 매일의 매매거래량 및 그 성립가격과 최고·최저 및 최종가격 등 시세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34조(정보교류차단) ① 배출권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4호의 업무,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 관련 징계업무(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이라 한다)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장감시업무 등과 청산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배출권 거래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청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시장감시업무를 위하여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및 결제내역 확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 간에 정보의 교류 차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할 것
3. 사무공간을 분리하고 제1항 각 호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적으로 저장되어 관리·감독·

열람될 수 있도록 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35조(긴급사태시의 처분) 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조(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인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지정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 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1항의 업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거나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8.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9. 제35조에 따른 긴급사태시의 처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고 또는 업무의 정지 조치 대상이 되는 배출권 거래소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 거래소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지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 환경부고시제2014-152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에 따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그리고 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상쇄등록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사업”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외부사업 사업자”란 외부사업의 발굴·시행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체를 말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제12조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하여 확보한 온실가스 인증실적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3. “외부사업 참여자”란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 외부사업 사업자, 배출권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인증위원회”란 법 제26조에 따라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5. “외부사업 인증실적”이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 중 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증한 감축량을 말한다.

6.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말한다.
 7.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사업경계”란 외부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하는 영역을 말한다.
 9. “추가성”이란 법적·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외부사업의 특성으로서, 인위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활동 이상의 추가적인 노력을 말한다.
 10.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 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1. “타당성평가”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말한다.
 12. “모니터링”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검증”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검증기관”이란 영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5. “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및 외부사업 참여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처분계정, 산림예치계정 및 상쇄배출권계정으로 구분된다.
 16. “발행계정”이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 외부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7. “산림예치계정”이란 산림분야 사업의 이산화탄소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산림분야 사업으로부터 발행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부분을 예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18. “보유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 외부사업 참여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9. “취소계정”이란 외부사업 참여자가 이전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20. “상쇄배출권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실적을 보유하는 계정으로 할당대상업체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21. “처분계정”이란 할당대상업체가 보유 또는 취득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한 후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상쇄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부사업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총괄·조정
2. 외부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과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
3.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승인
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5. 상쇄등록부 관리 및 운영
6. 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방법론 승인 및 개정
8.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검증심사원 교육 및 양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외부사업 승인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
3. 소관부문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
4. 기타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지원을 위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5조(검증기관의 업무) 이 지침과 관련하여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시, 검증에 대한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제6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1. 환경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관련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외부사업 사업자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영 제32조에 따라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 및 검증기관
4.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5. 위의 각 호에 종사하였던 자

제7조(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외부사업 타당성평가와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의 총괄 운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검증기관 및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요청을 받은 기관과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외부사업의 승인

제8조(승인 대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는 외부사업(이하 “승인대상 외부사업”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제거 또는 개선하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단순한 생산량 감소, 유지 보수 등의 행태 변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은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지 아니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승인대상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외부사업 사업자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청정개발체제 사업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내부에서 시행된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2. 영 부칙 제3조에 따라 1차 계획기간과 2차 계획기간에는 외국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등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없다.
3. 외부감축실적이 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 일반적인 경영여건에서 실시할 수 있는 행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동 및 조치에 따른 감축이 발생되어야 한다.
5. 외부감축실적은 지속적이고 정량화되어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6. 외부사업은 제18조에 따라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승인한 방법론을 적용해야 한다.

③ 승인대상 외부사업의 분류 및 등록 특례 사업은 별표1에 따른다.

제9조(승인대상 외부사업의 규모 및 종류) ① 승인대상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량의 최소규모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예상량이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연간 600톤을 초과하는 사업은 일반 감축사업으로 승인하고, 600톤 이하인 사업은 소규모 감축사업으로 승인한다.

③ 제2항의 소규모 감축사업은 별표1에 따른 승인대상 외부사업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하 “묶음 감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묶음 감축사업의 총 예상 감축규모는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연간 3,0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환경부장관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자발적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정책 감축사업”이라 한다)을 정책 감축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⑤ 승인대상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제10조(사업 시작일) ① 사업 시작일은 외부사업을 시작하는 날로서 다음 각 호 중 가장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2.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3.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또는 이에 대한 비용 지불일 등 중요하지 않은 지출행위는 사업 시작일로 보지 않는다.

③ 외부사업은 사업 시작일이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기본법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일이 기본법 시행일 이전인 사업의 경우에도, 1차 계획기간 동안 외부사업으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본법 시행일 이후의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만을 인정한다.

제11조(인증유효기간) ①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사업계획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계상되며, 사업의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갱신형 또는 고정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7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되며, 고정형의 경우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외부사업의 유효기간은 갱신형의 경우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2회로 제한되며, 고정형의 경우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30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④ 묶음 감축사업의 유효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을 준용하며, 묶음 감축사업에 포함된 모든 단위 사업들은 동일한 유효기간을 갖는다.

⑤ 정책 감축사업의 유효기간은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8년 이내로 하되, 연장은 가능하지 않다. 정책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유효기간은 제2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 감축사업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에 속하는 정책 감축사업의 경우 유효기간은 사업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60년 이내로 한다. 정책 감축사업에 속한 각각의 단위사업의 유효기간은 제3항을 준용하며, 각각의 단위사업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해당 정책 감축사업의 유효기간 종료일은 모두 동일하다.

제12조(외부사업 승인 신청)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외부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2. 별표 4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국문 요약서
3. 해당 감축제도의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제13조(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부장관은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외부사업의 일반요건 준수 여부
2. 적용된 방법론의 적절성
3.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의 적절성
4.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
5.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성
6. 모니터링 계획의 적절성

7. 유효기간의 적절성

8. 외부사업의 중복 등록 여부

9. 제7항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있는 경우 조치의 적절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만을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을 위한 평가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내용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타당성 평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승인 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따라 승인신청 서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하고자 하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수정 또는 보완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당성 평가 의견서에 대한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의 수정 및 보완은 3회를 넘을 수 없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와 관련한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추가성 평가) ① 제13조제1항제4호의 추가성 입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하 “추가성 평가”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를 평가 한다.

1. 법적·제도적 추가성

2. 경제적 추가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60,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하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을 갖는 일반감축사업 및 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다.

③ 추가성 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외부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승인신청을 한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외부사업의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신청이 제13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제14조에 따른 추가성 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심의 결과 외부사업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승인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
3. 외부사업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사업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승인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3장 외부사업 방법론

제18조(방법론 승인 접수)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외부사업 방법론으로 승인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신청서
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

② 제1항제2호의 외부사업 방법론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법론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2. 베이스라인 방법론
3. 모니터링 방법론
4. 참고 문헌

제19조(방법론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방법론 승인 신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이 신청된 방법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방법론 적용조건의 적절성
2. 베이스라인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3. 모니터링 방법론 기술의 적정성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를 위하여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3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방법론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20조(방법론 승인 심의) ①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면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방법론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방법론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심의 결과 방법론으로 승인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방법론(이하 “승인 방법론”이라 한다)을 제38조에 따라 구축된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외부사업 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승인 방법론에 대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외부사업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제22조(방법론 개정)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 방법론을 개정할 수 있다.

1. 기존 승인 방법론을 적용했을 경우의 감축실적이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발견된 경우
2. 국내 법규 개정 및 기술 발달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이 국내 실정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기존 승인 방법론의 용어나 수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 또는 모호한 점이 확인된 경우
4.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거나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②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존 승인 방법론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승인 방법론을 개정하여 상쇄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1.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방법론 신청서
2.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방법론 제안서
3. 개정된 방법론을 적용한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방법론(이하 “개정 방법론”이라 한다)이 기존 승인 방법론이 적용되는 다른 사업 활동의 적용범위를 제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승인방법론의 개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3조(방법론 개정 평가 및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인 방법론의 개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방법론 등록 절차를 준용하여 개정 방법론에 대한 검토, 승인 심의 및 등록 절차를 수행한다.

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방법론 개정에 대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방법론 개정의 효과) ① 승인 방법론의 개정이 승인된 시점 이후에 상쇄등록부에 등록을 신청하는 외부사업은 최근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정 승인 시점에 이미 기존 승인 방법론을 사용하여 등록된 외부사업 경우에는 개정된 승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방법론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승인 방법론의 유효일 및 기존 승인 방법론에 대한 유효기간(적용 가능 기간 등을 말한다) 등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장 외부사업의 시행 및 모니터링

제25조(외부사업의 시행)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작일이 외부사업 승인일 이전인 경우 착수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승인된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외부사업을 시행하고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대상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사업 모니터링의 원칙)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방법은 등록된 사업계획서 및 승인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외부사업은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일관성, 재현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갖고 산정되어야 한다.
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추정 시, 값은 보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27조(외부사업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별표 7에 따른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사업 이행 및 변경사항에 대한 기술
3.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기술
4.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적용되는 모니터링 데이터 및 인자에 대한 기술
5.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②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년마다 1회 이상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주기를 달리 적용한다.

1. 산림분야에 속하는 외부사업의 경우 매 5년마다 1회 이상
2. 제9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감축사업의 경우 매 2년마다 1회 이상

④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의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외부사업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및 인증

제28조(검증의 원칙)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검증보고서에 투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외부사업의 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

측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27조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검증기관에 해당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평가 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업 등록 후 변경에 대한 평가
2.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 이행
3. 방법론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준수
4.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이행
5. 데이터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흡수량) 산정
6.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절차
7.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의 중복 인증 여부

④ 검증기관은 문서 검토 및 현장 검증 결과,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검증기관은 평가된 결과에 대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으로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대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의 외부사업 사업자가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이 아닌 제1항에 따른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별표4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승인하도록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30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신청) ① 환경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 결과가 적합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서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검증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검증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6항에 따라 해당 감축제도에 의한 절차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신청서
2. 해당 감축제도에 제출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에 대한 국문 요약서
3. 해당 감축제도로부터 발행된 실적 처분 문서

제31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대한 검토)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문서 및 정보의 일치성
 2. 온실가스 감축량의 타 제도에서 중복 인증 여부
 3. 시정조치 및 검증 결론의 적절성
 4. 검증 심사팀의 적격성
 5. 제28조, 제29조 및 검증지침에 따른 검증 절차 세부사항 준수 여부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된 서류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근거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외부사업 사업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제3항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⑤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가 제1항 각 호의 검토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만 검증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
-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검토서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사업 사업자가 인증신청 서류의 수정 또는 보완을 실시하고 제출해야하는 기한을 명기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외부사업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관련 서류를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은 3회까지 할 수 있다.

제32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심의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감축량 인증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서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의 발급) ① 환경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심의 결과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증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이 결정된 외부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별표6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2.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다른 감축제도 또는 감축사업으로 추진된 후 중복하여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사용된 경우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 하기 전에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증 취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할당대상업체가 제37조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권 제출에 사용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외로 한다.

제6장 인증실적의 발행 및 처분

제35조(인증실적의 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승인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정수단위(소수점 이하를 버림한 것을 의미한다)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된 외부사업에 대한 발행계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행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인증실적 이전 관련 증빙자료에서 정한 외부사업 인증실적 소유권 배분에 관한 내용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제36조(인증실적의 이전) ① 환경부장관은 자신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다른 외부사업 참여자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된 바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할 수 있다.

1.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이전신청서

2. 관련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을 신청한 자의 보유계정에 등록된 해당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취소계정으로 이전하고, 신청에 따라 이전을 받는 자의 보유계정에 이전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등록한다.

제37조(인증실적 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보유계정에 있는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영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전환하고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쇄배출권으로 전환된 외부사업 인증실적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 한다. 이 경우 전환된 상쇄배출권은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상쇄배출권계정에

등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전환 신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경우에는 상쇄배출권 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장 상쇄등록부의 구축 및 관리

제38조(상쇄등록부의 구축)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등록,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이전·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 일련의 과정이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이 포함된 상쇄등록부를 구축하여야 한다.

1. 계정 발급 및 관리 기능
2. 외부사업의 신청, 타당성평가, 등록, 모니터링, 검증, 인증 등을 기록·관리하는 기능
3.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이전·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을 기록·관리하는 기능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기능

제39조(상쇄등록부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가용성과 기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상쇄등록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인증실적의 발행·이전·처분 및 상쇄배출권 전환 등에 대하여 전자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상쇄등록부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1. 외부사업으로 신청 또는 등록된 사업의 목록 및 일반정보
2. 외부사업 인증실적

제8장 인증 유효기간 갱신

제40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접수)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된 외부사업의 유효기간 갱신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해당 외부사업의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외부사업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6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며, 이때까지 갱신 승인이 신청되지 않는 외부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가 유효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1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40조에 따라 접수된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에 제13조제1항 및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부장관은 심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1.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승인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2.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방법론이 외부사업 등록 후 철회되고 신규 방법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된 방법론의 최신 버전 적용
3. 외부사업의 내용 및 베이스라인의 변화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른 승인된 방법론을 적용하거나 승인 방법론의 개정을 신청
4. 등록된 사업계획서에서 적용된 기존 자료 및 변수들의 유효성 여부

5. 외부사업 등록 이후, 관련 법 및 규정의 변화

6. 외부사업 등록 이후, 사업 여건의 변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2항의 요구에 따른 근거자료를 지체없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인증유효기간 갱신 심의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인증유효기간 갱신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인증유효기간 갱신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갱신 승인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유효기간 갱신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갱신이 승인된 외부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사후변경

제44조(사업계획의 변경 접수)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변경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사업자명, 사업장명, 전화 등 일반정보

2. 외부사업의 소유권

②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사업계획서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성에 영향이 있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규모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방법론 적용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각종 법규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기존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사업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45조(사업계획 변경 심사)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제4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하여 심사한다.

제46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44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이 제4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평가 결과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된 사업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사업 사업명과 등록 고유번호는 변경되지 않는다.

제47조(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외부사업 사업자가 별지 제27호 서식의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은 당초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2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1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의 총 기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48조(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심의 요청) ① 환경부장관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심사결과 및 승인여부 검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인증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승인) ① 환경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신청이 제48조에 따른 심의 결과 변경 승인이 적합한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른 인증유효기간 시작일 변경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의 변경 신청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상쇄등록부에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50조(정보공개)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제39조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 조항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외부사업 승인 신청 또는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신청 시에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정보 비공개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해당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가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외부사업 정보의 비공개 여부 심의 결과를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부사업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사업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결정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1조(이의신청) ①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외부사업 등록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위해 외부사업 등록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법 제38조제2항을 준용 한다.

제52조(산림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 인증실적 발행에 관한 특례) 이 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분야로부터 발행된 인증실적의 발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1. 환경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외부사업의 발행계정으로 발행된 인증실적의 경우,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인증실적의 일부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표 9에 따른다.
- 2. 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따라 산림예치계정으로 이전된 양을 제외한 인증실적에 대하여 제35조제3항에 따라 외부사업 사업자의 보유계정으로 인증실적을 발행한다.

제53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에 관한 업무
 - 2.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을 위한 모니터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검토에 관한 업무
 - 3. 방법론 승인 및 개정을 위한 검토에 관한 업무
- ② 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5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영”이라 한다) 제32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라 검증기관의 지정 및 검증업무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3.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4. “검증팀”이란 검증을 수행하는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과 이를 보조하는 검증심사원보 및 제10조에 따른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활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누출량”이란 감축사업 시행 과정 중 외부사업의 범위 밖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량 또는 감축량을 말하며, 그 양은 계산과 측정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내부심의”란 검증기관이 검증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에서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전에 검증과정 및 결과를 재검토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리스크”란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과 연관된 오류를 간과하여 잘못된 검증의견을 제시할 위험의 정도 등을 말한다.
 9. “불확도”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0. “베이스라인 배출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1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란 외부사업 사업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통해 저감되는 감축량을 말한다.
 12.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13.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14. “피검증자”란 이 지침에 의한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할당대상업체 또는 외부사업 사업자를 말한다.
 15. “합리적 보증”이란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을 포함한다)이 검증결론을 적극적인 형태로 표명함에 있어 검증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가 수용 가능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법 제24조, 제30조 및 영 제31조, 제32조, 제40조에 따른 검증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② 온실가스 배출량의 검증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승인한 국제규격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증기관의 지정·관리
 2. 검증심사원의 교육 및 양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의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보, 기술전문가 등을 포함한 검증팀) 및 검증기관은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요청)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해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의 검증

제7조(검증의 기본원칙)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관한 검증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검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할 것
2.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검증자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은 감축량 산정 시 보수적인 관점으로 평가할 것
4. 합리적 보증이 가능한 수준으로 검증을 수행할 것

제8조(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검증기관은 검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검증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검증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피검증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산정(이하 “검증대상”이라 한다)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때에 2인 이상의 검증심사원으로 검증팀을 구성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의 검증심사원을 검증팀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에는 제28조제2항 각 호의 분야 중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검증대상이 속하는 분야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1인의 검증심사원이 복수의 분야에 대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하여는 자격을 갖춘 검증심사원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검증팀에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업무를 보조 및 지원하기 위해 검증심사원보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팀에 포함된 검증심사원보의 인적사항 등을 검증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에 포함될 수 없다.

1. 피검증자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써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피검증자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자로써 참여를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당해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자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검증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자를 검증

팀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검증심사원으로 교체하도록 검증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전문가) ① 검증팀장은 검증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증대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기술전문가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1. 피검증자의 공정, 운영체계 등 기술적 이해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흡수량) 등의 산정·보고 및 검증의 방법과 절차
3. 데이터 및 정보에 대한 중요성 판단과 리스크 분석
4.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전문가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은 “기술전문가”로 본다.

④ 기술전문가의 업무는 검증팀장이 요청하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에 한한다.

제11조(내부심의팀의 구성) ① 검증기관은 검증팀의 검증에 대한 내부심의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소속 검증심사원으로 내부심의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를 하여야 할 검증에 참여하였던 자는 내부심의팀에 포함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검증대상의 검증을 위한 검증팀” 및 “기술전문가”는 “내부심의팀”으로 본다.

제12조(모니터링 계획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모니터링 계획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모니터링 계획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의 검증은 합리적 보증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항목관리 등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제13조(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은 별표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검증기관은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의 절차 및 방법) ① 외부사업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검증기관은 할당대상업체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평성 위반 여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검증은 별표4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적인 검증방법은 별표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증기관이 검증의 합리적 보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에서 정한 검증절차 이외에 추가적인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검증기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고하여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증 시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시정조치) ①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며 발견된 검증기준 미준수 사항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등(이하 “조치 요구사항”이라 한다)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받은 피검증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내용 등이 반영된 별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보고서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이하 “시정결과”라 한다)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검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3회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은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시정을 피검증자에게 요구한 경우 해당 조치 요구사항 및 시정결과에 대한 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증보고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의견의 결정) ① 검증팀장은 모든 검증절차 및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해당 검증대상에 대한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배출량이 산정되었으며, 불확도와 오류(잠재 오류, 미수정된 오류 및 기타 오류를 포함한다) 및 수집된 정보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나,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

3. 부적정 : 불확도와 오류 평가결과 등이 별표3 제5호 다목의 중요성 기준 이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③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검증 결과에 따른 최종 검증의견은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여야 한다.

1. 적정 : 검증기준에 따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이 산정되었으며,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외부사업 사업자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된 경우

2. 부적정 : 중요한 정보 등이 온실가스 감축량 등의 산정·보고 기준을 따르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검증기관의 모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제시된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제17조(검증보고서 작성) ① 검증팀장은 최종 검증의견을 확정된 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검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 개요 및 검증의 내용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사항 및 그에 따른 조치내용
3. 최종 검증의견 및 결론
4. 내부심의 과정 및 결과
5. 기타 검증과 관련된 사항

제18조(내부심의) ① 검증팀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증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내부심의팀에게 해당 검증에서의 검증절차 준수여부 및 최종 검증의견에 대한 내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장은 제1항에 따른 내부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내부심의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증 수행계획서, 체크리스트 및 검증보고서
2. 검증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명세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모니터링 보고서
5. 기타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③ 내부심의팀은 내부심의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증팀장은 이를 반영하여 검증보고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 내부심의팀은 제3항에 따라 수정한 검증보고서를 확인하여 내부심의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를 종료하고 이를 검증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검증보고서의 제출) 검증기관은 제18조에 따른 내부심의가 종료된 검증의 보증수준이 합리적 보증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최종 검증보고서를 피검증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20조(검증기관 등의 운영원칙) ① 검증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기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소속 검증심사원이 자격을 갖춘 분야에 대해서만 검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피검증자 등의 특성과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 있는 검증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당대상업체의 동의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과 영에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검증기관의 지정) ①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지정신청

인”이라 한다)는 별표6에서 정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13명 이내의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증기관 지정심사 자문단의 자문결과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임원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있는 경우
2.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할당대상업체와 동일 법인(개인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다)이거나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5. 법 제49조 및 영 49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6.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한 컨설팅업, 저감시설 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개인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하여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인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검증기관 지정일
3. 검증기관에 소속된 검증심사원의 전문분야

⑥ 제5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기본법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정된 검증기관의 최초 지정일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 한다.

⑦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검증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검증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 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검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2. 법인 및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3.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의 변경
4. 검증심사원의 변경
5. 검증 전문분야의 변경

② 제1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7호 또는 제8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변경내용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변경내역을 검증기관 지정서에 기재하여 해당 변경을 신고한 검증기관에 교부하고 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 변경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검증기관의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 지정 후 매 1년마다 검증업무 수행의 적절성, 검증심사원의 자격 유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 평가(현장확인 및 입회심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 검증기관이 휴업종료 후 업무를 재개할 경우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기관 사무소 소재지, 조직 등 일반현황

2. 검증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절차의 준수 여부, 검증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한 평가 결과

3. 조치 필요사항 등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검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검증기관은 검증결과보고서,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검증기관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기관은 소속 임·직원과 검증심사원 보안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검증기관은 피검증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검증업무를 다른 검증기관에 재위탁 또는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검증기관은 검증기관 및 동일한 법인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 관련된 자문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자문 또는 서비스에 참여한 검증심사원은 자문 종료 후 2년 이내에 해당 피검증자에 대한 검증심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

1.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설계, 개발 또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이행 및 관리, 프로젝트의 설계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산정, 보고,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개발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측정 및 분석(Tier4 수준의 온실가스 연속측정 등)기기의 설치 및 관리, 측정 할당대상업체만을 위해 온실가스 관련 매뉴얼, 핸드북 또는 절차를 준비하거나 작성
 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탄소자산관리, 온실가스 감축사업 경제성 평가 자문,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대한 자문 또는 중개서비스
- ⑥ 검증기관은 공평성 준수 및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공평성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25조(검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증과 관련한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증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지정서를 대여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별표3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검증의 경우에는 별표5의 검증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5. 검증기관의 인력요건에 미흡한 경우(검증인력의 변동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6. 제21조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7. 제22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8.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해 검증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훼손한 경우
 9. 제24조에 따른 검증기관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0. 검증기관이 파산을 신청한 경우
 11. 제21조제6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재지정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취소 요청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증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증기관명, 대표자, 지정취소 사유 및 지정취소 일자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즉시 해당 검증기관의 검증기관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6조(검증기관의 휴·폐업신고 등) ① 휴업 또는 폐업 하려는 검증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와 검증기관 지정서, 검증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계획(폐업신고에 한한다) 및 해당 기간까지의 검증업무 수행내역서를 작성하여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관리방안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사업장명,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등을 즉시 공고한 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는 관보에 공고한다.
- ④ 검증기관이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업무재개를 신고한 검증기관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공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 이내에 휴업기간은 총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27조(검증소요일수 기준) 검증기관은 별표7에서 정한 검증 소요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검증심사원의 등록 및 관리

제28조(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의 자격 및 등록) ① 검증심사원보는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8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검증심사원보는 검증심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 ② 검증심사원보가 검증기관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12 및 별표13의 배출활동 구분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검증실적 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각 호에서 정하는 횟수 이상 검증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검증 실적과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 분야 교육 및 평가를 이수하여야 한다.

1. 광물산업 분야(시멘트·석회 생산, 유리 생산 등 탄산염의 기타 공정사용 등) : 5회
2. 화학분야(암모니아·질산·아디프산·카바이드·이산화티탄·소다회·석유화학제품·불소화합물 생산 등) : 5회
3. 철강·금속분야(철강·합금철·아연 생산 등) : 5회
4. 전기·전자분야(전자·전기산업 등) : 5회
5. 폐기물 분야(폐기물, 하·폐수처리, 바이오매스 등) : 3회
6. 농축산 및 임업분야(농업, 축산, 조림 및 재조림 등) : 3회
7. 공통 분야(연소, 전기·열·스팀의 사용, 수송 및 탈루성 배출 등) : 전문분야에 관계없이 5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1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모든 세부절차에 모두 참여한 자에 대해서만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당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2의 사업장 지정 최소기준 이상의 다른 유형의 배출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검증실적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2항의 전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검증심사원으로 등록(전문분야의 추가 또는 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심사원보의 등록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교육이수자 명단으로 갈음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검증심사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검증심사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지침에 의해 검증심사원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최근 3년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18조의 3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은 자

제29조(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 ①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모두 갖춘 경우 별표8 제3호의 해당분야 검증심사원이 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분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실무경력 또는 심사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
2. 별표8 제3호의 해당 분야에서 3회 이상 심사한 경력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증실적 인정에 있어 별표4에 따른 검증절차 중 2단계부터 3단계까지만 참여한 경우에도 1회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적 분야는 가장 주된(공통은 제외할 수 있다) 배출활동 분야에 대하여 인정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국제적인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8의 외부사업 전문분야를 추가하거나 보다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0조(검증심사원의 관리) ① 검증심사원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매 2년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해당분야의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증심사원으로 등록한 경우
2. 검증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8조제7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4. 검증심사와 관련한 업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
5.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검증팀에 참여하여 검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6. 검증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검증업무를 수행하거나 당해연도에 재차 검증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제31조(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 ① 검증심사원의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증심사원보 양성교육 과정 : 새로이 검증심사원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40시간 이상

2. 외부사업 검증심사원 교육 과정 : 제28조에 따른 검증심사원이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총 24시간 이상
3. 검증심사원 보수교육 과정 : 검증심사원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해당 전문분야별 이론교육,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단,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에 대한 보수교육의 경우 8시간 이상으로 함
4. 전문분야 추가 과정 : 제1호에 의한 분야 외의 전문분야를 인정받고자 하는 검증심사원(검증심사원 보를 포함하며, 해당 분야 검증실적이 있는 자에 한한다)이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서 이론교육과 실습 및 평가를 포함하여 16시간 이상
-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과정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③ 교육기관의 장은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교육과정과 유사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④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생을 선발하는데 있어 분야별 검증 수요, 해당 분야 검증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교육기관의 장은 검증심사원 교육신청자가 별표8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제32조(검증심사원 교육기관) 검증심사원 교육기관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 및 교육의 기본방향
 2. 제31조제1항제3호 교육 대상 검증심사원의 중장기 추계
 3. 교육과정별 주요 내용 및 교재, 과정별 최소 이수시간
 4. 교육과정별 평가방법 및 시기
 5. 교육장소 및 교수요원 확보방안
 6. 기타 검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 제34조(교육실적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교육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항은 매회 교육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교육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2.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입교생 및 수료생 명단
 3.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등 설문조사 결과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 제35조(수수료 기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공고할 수 있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 내용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6조(업무정지 및 지정취소기준) ①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지정취소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9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볼 때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9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사업 검증심사원 등록례) 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외부사업 검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는 2016년 12월 31일 까지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외부사업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외부사업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전문가가 검증팀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21조제6항 및 제26조제5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54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의 명세서의 제출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과, 법 제25조 및 영 제33조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법 제40조 및 영 제49조제2항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 검토”란 배출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해 계획기간 시작 이전에 할당대상업체가 검토를 요청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2. “배출량 인증”이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를 최종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성 평가”란 할당대상업체에서 제출한 명세서와 검증보고서를 활용하여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①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제출 및 정보 공개와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이 지침을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 명세서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침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이하 “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2.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확인 및 시정이나 보완 명령
3.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4.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통지 및 배출권등록부 등록
5.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
6.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명세서 제출 명령
7.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한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직권산정
8.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9. 배출량 인증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10. 법 제37조제5호 및 제6호에 관한 실태조사
11. 명세서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제출 협조)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검증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자료가 할당대상업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할당대상업체가 관리대상 배출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알기 위해 전력 사용량, 열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준수) ① 이 지침에 의해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보안유지 의무를 따라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를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2.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3. 적합성 평가 수행을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4.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를 취급하는 자
5. 기타 이 지침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의 정보 및 배출량 인증 관련 자료를 취급하는 자

③ 이 지침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명세서의 제출

제7조(명세서의 작성방법) ① 배출권거래제의 명세서 작성방법은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하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8조(명세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턴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제10호의 모니터링 계획은 제9조의 사전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거에 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제1항의 당해 연도 명세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40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 경우

2. 조직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론이 변경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등에 상당한 변경이 유발된 경우

4.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고유 배출계수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거나, 그 값이 변경된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중 관리업체가 아니었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계획의 사전검토 등)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8조제1항 후단의 사전검토를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계획기간 중 신규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된 해의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 요청한 모니터링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의 요청에 따라 사전검토를 마친 모니터링 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력관리를 하여 명세서 제출 시 할당대상업체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에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① 제9조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할당대상업체는 계획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 후 14일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추가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사항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7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업종의 변경

2. 조직경계의 변경

3. 배출활동 및 배출시설의 변경

4. 배출량 산정방법의 변경 (배출계수, 매개변수, 시료채취·샘플링·분석 절차 포함)

5. 활동자료 수집, 측정 방법의 변경 사항(측정기기 포함)

6. 영 제31조제3항의 시정명령, 보완명령에 따른 변경

7. 담당자 정보의 변경 사항

8. 기타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의 신·증설 등의 변경 사항이 할당량과 관련되는 경우(예상된 신·증설로서 할당을 받은 경우 또는 예상치 못한 신·증설로서 추가 할당을 신청하기 위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이전에 작성·변경하여 추가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추가검토를 마치기 전까지 가능한 경우 기존 모니터링 계획과 변경 모니터링 계획을 병행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모니터링 계획의 변경 사항은 매 이행년도 종료일 이전까지 모니터링 계획 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① 할당대상업체는 기술적인 이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기간 동안 사전검토된 모니터링 계획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환경부장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소명자료를 당해연도 명세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계획의 일시적 적용 불가 사유
2. 기존 계획을 대체하는 임시 모니터링 방법
3. 원상복귀 된 시점 (일자) 및 관련 조치 사항

제3장 명세서의 확인

제12조(명세서의 확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영 제3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누락 및 검증기관의 검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해서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제2항의 기한 내에 이를 반영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에 법 제43조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할 것을 환경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 4 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14조(배출량의 인증 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산정·보고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과거에 보고한 내용이나 동일한 종류 또는 유사한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보수적으로 재산정한 배출량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영 제3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직권으로 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가장 큰 값을 그 할당대상업체의 실제 배출량으로 인증한다. 다만, 결과 값 산정이 불가능한 방법은 제외한다.

1. 할당대상업체의 직권산정 해당년도 직전까지 환경부장관에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 중 최대값
2. 할당대상업체의 직권산정 해당년도 직전까지 환경부장관에 보고된 과거 온실가스 배출 실적으로 추세분석에 의해 산정된 해당년도 배출량
3. 할당대상업체의 직권산정 해당년도 직전까지 환경부장관에 제출한 명세서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의 최대값과 직권산정 해당연도의 실태조사 불가 사유 발생 시점까지의 생산량 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정한 배출량
4. 동일한 업종 내 유사 규모의 다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참고하여 산정한 배출량

제15조(적합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①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적합성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평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명세서 상 산정방법으로 배출량 산정의 재현가능성
2. 명세서 상 배출계수 및 활동자료의 적절성
3. 검증보고서의 검증의견 및 명세서 상 검증의견의 적절한 반영여부
4. 과거 배출실적과의 비교를 통한 배출량의 급격한 증감이나 배출시설 누락여부
5. 조직 경계 내·외부 온실가스 배출원 등 변경 발생 여부
6. 배출량 산정 방법론 등의 변경 여부
7. 타당한 모니터링 계획에 따른 배출량 측정 및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8. 그 밖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적합성 평가는 모든 할당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행한다.

③ 적합성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적합성 평가기관의 현장조사 실시요청을 받으면 제13조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관의 현장조사를 승인하고 해당 업체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16조(적합성 평가 결과의 보고) ① 적합성 평가기관은 적합성 평가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환경부장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1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합성 평가기관은 배출량 산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③ 적합성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제14조제2항의 기준에 따라 배출

량을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할당대상업체가 환경부장관이 요구한 시정이나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하여 적합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제17조(이의신청) ① 배출량 인증결과에 이의가 있는 할당대상업체는 통지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인증한다.

제18조(제3자에 대한 자료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 시 할당대상업체 또는 검증기관이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3의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배출권거래제 명세서의 공개

제19조(명세서의 공개 등)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공개에 관하여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의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부문별 관장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본다.

보칙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4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기관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에 제4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적합성 평가를 통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산정 결과 검토
 2.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자료 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3.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인증 이의신청에 대한 적절성 검토
 4. 환경부장관의 직권산정을 위한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5. 기타 배출량의 인증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분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검토 실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2017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14-155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정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감축실적의 인정의 세부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이란 할당대상업체에서 신청한 조기감축실적의 양 중에서 평가를 통해 타당하다고 인정된 양을 말한다.
- 2.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이란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에 대해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해당 업체에 추가 할당되는 양을 말한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주무관청의 업무) 주무관청(이하 “환경부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할당대상업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조기감축실적의 관리
- 2.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 검토
- 3.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실태조사
- 4.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 및 통보
- 5.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의 이의신청 검토 및 결과 통보
- 6.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의 확정 및 통보
- 7.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제 2 장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제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기준) 환경부장관이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기감축실적은 국내에서 실시한 행동에 의한 감축분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 2. 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하여 그 실적을 인정한다. 다만,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여 조직경계 외에서 실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3. 조기감축실적은 할당대상업체 단위에서의 감축분 또는 사업단위에서의 감축분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다.
- 4.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기행동으로 인한 감축이 실제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정량화 되어야 하고 검증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유형) 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인정이 신청된 조기감축실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유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한정한다. 다만, 별표1에서 정한 유형 외에 자발적 감축사업으로 감축기술 및 재원 등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된 개별 감축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영 제1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이 최종 확정·통보한 양으로 한다.

제7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예외) 제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할당대상업체가 법적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업의 결과에 수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의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조직경계 내 배출시설의 폐쇄 등으로 추가적인 노력 없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3. 할당대상업체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을 조직경계 외부 또는 외국으로 이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
4. 할당대상업체 내에서 생산, 관리, 수송,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활동을 조직경계 외부로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된 경우
5. 관련 규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따라 획득한 권리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상한 경우

제 3 장 조기감축실적 인정 절차

제8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신청) 할당대상업체는 2016년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조기감축실적의 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조기감축실적이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한다.

1. 조기행동의 일반사항
2. 조기행동의 실제성
3.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효과의 지속성
4. 조기행동의 추가성
5.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의 정량화에 대한 타당성
6. 기준 배출량 산정 방법론의 적합성
7. 조기행동에 따른 감축실적 산정방법의 적합성
8.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검증결과
9. 조기감축실적 인정 예외 사유에의 해당여부
10. 제7조의 인정유형에 따른 타 감축실적과의 중복여부
11. 환경 및 관련 법규에의 저촉여부

② 환경부장관은 조기감축실적이 제6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확정된 이행실적의 초과달성분을 확인하여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행연도의 초과배출량은 차감한다

③ 제1항제4호의 추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상당부분 크게 초과하여 실시한 행동

2.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사용에 따른 비용상의 어려움, 시설·장비의 운영과 유지상의 어려움, 그밖에 제도적인 어려움과 같은 장애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는 등 기업 경영에서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개선활동 이상의 행동

④ 환경부장관은 조기감축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서 외에 별도의 근거자료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근거자료를 즉시 환경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정받은 조기감축실적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 및 통보) ① 환경부장관은 2016년 10월 31일까지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산정하고 이를 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한다.

② 해당 할당대상업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한다.

제11조(조기감축실적 할당량 확정·통보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서 산정된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검토하여 영 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기감축실적 할당량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2016년 11월 30일까지 통보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추가할당하고, 이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12조(조기감축실적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하여 공개한다.

1.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2. 조기감축실적 인정사업의 목록
3.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및 할당량

보칙

제13조(업무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 1호에 따른 할당대상업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 조기감축실적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신청서 검토에 관한 업무
2. 제4조 제3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3. 제4조 제4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에 관한 업무
4. 제4조 제5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인정량 산정의 이의신청 검토에 관한 업무
5. 제4조 제6호에 따른 조기감축실적 할당량 확정을 위한 할당량 산정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 및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고시제2014-516호

과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개발기간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27호(2013.11.26)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한 「과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기간을 변경 고시합니다.

201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개발계획)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명 칭 : 과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 나. 위 치 : 경기도 과주시 문발동, 산남동, 서패동, 신촌동 일원
- 다. 면 적 : 1,561,938.6㎡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21세기 고도 정보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사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 시대의 문화중심지”로 육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한국토지주택공사(부지조성(준공) : 1단계, 2-1단계, 2-2단계)
과주시장(문화공원(3,757㎡) 및 후생복지시설(1,120.3㎡))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가. 개발기간(변경)

- 1단계(변경)
 - 지정 : 2013.11 ~ 2014. 06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변경 : 2013.11 ~ 2015. 12 (문화공원 및 후생복지시설)
- 2단계(변경없음) : 2004 ~ 2013
 - 2-1단계(산업단지, 북측진출로, 서측진입로) : 2004 ~ 2013. 02
 - 2-2단계(제2동측진입로) : 2004 ~ 2013. 09 (산업단지 외의 사업)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변경없음)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